부 록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발간 자료

연구소 소식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출범

- 출범일자 : 2023. 4. 1.
- 연구소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등재일자 : 2023. 5. 24.
- 등재대상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입구
- 참석 : 이사장,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 재단 직원 등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3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등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3. 6. 29.(목) 14: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ㅇ 일시 : 2023. 8. 29.(화) 10:30 ~ 12:00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ㅇ 내용 : 등재 인증서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

ㅇ 참석 :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신순철(재단 이사장), 임상규(전북부지사), 이학수(정읍시장) 주영채(유족회장) 등 200여명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ㅇ 일시 : 2023. 8. 29.(화) 14:30 ~18:00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ㅇ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ㅇ 발간일자 : 2023. 8. 30.

ㅇ 수록자료

-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 천우협(天佑俠)
- 남정여록(南征餘祿)
-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 부안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ㅇ 일시 : 2023. 10. 26.(목) 11:00 ~ 18:00

ㅇ 장소 :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ㅇ 주최 : 부안군

ㅇ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ㅇ 주제 : 홍재일기(1866~1911)로 본 격동기 조선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 정읍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ㅇ 일시 : 2023. 11. 3.(금) 14:00~18:00
-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ㅇ 주최 : 정읍시
- ㅇ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ㅇ 주제 : 만석보 위치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 고창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ㅇ 일시 : 2023. 11. 15.(수) 14:00~18:00
- ㅇ 장소 :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 ㅇ 주최 : 고창군
- ㅇ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ㅇ 주제 :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ㅇ 일시 : 2023. 11. 23.(목) 16:00
- ㅇ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ㅇ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6명
- ㅇ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 군산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ㅇ 일시 : 2023. 11. 25.(토) 14:00 ~ 17:30
- ㅇ 장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 ㅇ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ㅇ 주제 :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 장흥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9.(수) 14:00 ~ 18:00
- 장소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 : 장흥군
- 주제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창간

- 제호 : 동학농민혁명 연구
- 창간호 발간일 : 2023. 11. 30.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 2023. 12. 15.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 30.(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전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장)
- 기부액 : 2,000만원(정읍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4. 5. 11.(토) 17:3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제2호 발간

- 발간일 : 2024. 5. 31.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4. 6. 27.(목)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2024 정읍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7. 11.(목) 13:3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과 서훈 학술대회(국회토론회)

- 일시 : 2024. 8. 13.(화) 14:00 ~ 18:00
- 장소 : 국회 제3세미나실
- 주제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 후원 :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8. 19.(월) 13:50~18:00
- 장소 :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주최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워크숍

- 일시 : 2024. 8. 29.(목) 16:00 ~ 18:00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전북 정읍)
ㅇ 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방안 모색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6 발간

ㅇ 발간일자 : 2024. 8. 30.
ㅇ 수록자료
-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祕書類纂 朝鮮交涉資料)
-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日淸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箚部隊ノ行動)
- 내란실기 조선 사건(內亂實記朝鮮事件)
- 조선폭동실기(朝鮮暴動實記)
- 동아선각지사기전(東亞先覺志士記傳)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ㅇ 일시 : 2024. 9. 11.(수) ~ 9. 12.(목)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ㅇ 주최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ㅇ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ㅇ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ㅇ 일시 : 2024. 10. 15.(화) ~ 10. 16.(수)
ㅇ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ㅇ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ㅇ 주관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ㅇ 주제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남원학술대회 개최**

- ㅇ 일시 : 2024. 10. 23.(수) 14:00~18:00
- ㅇ 장소 :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ㅇ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ㅇ 주관 : 남원문화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ㅇ 후원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ㅇ 주제 : 대동세상을 꿈꾼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세계기록유산

□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ㅇ 일시 : 2024. 10. 30.(수) 14:00~18:00
- ㅇ 장소 :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2층 공연장)
- ㅇ 주최 : 완주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ㅇ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ㅇ 주제 :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ㅇ 일시 : 2024. 11. 15.(금) 11:00~17:00
- ㅇ 장소 : 고창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 ㅇ 주최 : 고창군
- ㅇ 주관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ㅇ 주제 :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ㅇ 일시 : 2024. 11. 22.(금) 16:00
- ㅇ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ㅇ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ㅇ 내용 : 24년 연구조사 사업 실적 및 25년 주요 사업 논의

□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제3호 발간

ㅇ 발간일 : 2024. 11. 30.

□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개최

ㅇ 일시 : 2025. 2. 11.(화) 15:00~18:00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ㅇ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ㅇ 저작물 : 지수걸(공주대 명예 교수), 2024,『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5. 2. 11(화) 14:00
ㅇ 장소 : 연구소 회의실
ㅇ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ㅇ 내용 : 25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제2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취임

ㅇ 취임일자 : 2025. 4. 1.
ㅇ 연구소장 : 김양식(전 청주대 교수)

□ 연구비 기부

ㅇ 기부자 : 신영우 (전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충북대 명예교수)
ㅇ 기부액 : 1,000만원(고창 녹두 대상 수상금)
ㅇ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ㅇ 일시 : 2025. 4. 25(금) 15:00
ㅇ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 집 위 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_민회수(홍익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 집 위 원 (당 연 직)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편 집 간 사 (당 연 직)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 리 위 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 리 위 원 (당 연 직)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윤 리 간 사 (당 연 직)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8. 14.
개정 2025. 3.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제4조(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거나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삭제〉〈개정 2024. 2. 23.〉

제16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정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별로 1회(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제18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1894.or.kr/pape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월 1일,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저자: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나. 제2저자: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다. 제3저자: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가. 장은 Ⅰ. Ⅱ. Ⅲ.,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 5. 11.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개정 2024. 2. 23.〉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나. 참고문헌은‘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국어의 로마자표기법’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참고문헌과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동학농민혁명 연구』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다. 전자 자료의 경우,‘저작권자,「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개정판’임을 명시한다.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동학농민혁명 연구』(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논문명 - 부제 - 」,『책명 - 부제 - 』,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논문명」,『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쉼표를 찍는다.

예시)『仁祖實錄』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쉼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壽齋遺稿』「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高麗大 晩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p.'또는'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개정 2024. 2. 23.〉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위의 책','위의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앞의 책','앞의 논문'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재수록〈개정 2024. 2. 00.〉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논문명」,『책명(잡지명)』: 1989,『책명』, 출판사, 면수.

나. 이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A 저자명, 1894,「논문명」,『책명(잡지명)』; B 저자명, 1989,『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 ])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4. 2. 23.〉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

져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 논문 및 비평 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 · 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20점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확인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반영)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게재 증명) 투고자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지 7]「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23.〉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6조 관련)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발간물의 발행인은 저자 혹은 본 발간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귀중

[별지 2]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4호 관련)

게재심사신청서

<table>
<tr><td>이 름</td><td colspan="2">(한글)</td><td colspan="2">(한자)</td><td>(영문)</td></tr>
<tr><td>소 속</td><td colspan="3"></td><td>직위</td><td></td></tr>
<tr><td>우편물
수취 주소</td><td colspan="5">우편번호(　　)</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일반전화</td><td colspan="2"></td><td>휴대전화</td><td></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논문 제목</td><td colspan="5">(한글)</td></tr>
<tr><td colspan="5">(영문)</td></tr>
<tr><td>심사 희망 전공 분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연구비
지원 논문</td><td>연구비 지원기관</td><td colspan="4"></td></tr>
<tr><td>지원연도/과제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본인(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td></tr>
</table>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5호 관련)

연구윤리 확약서

<table>
<tr><td>(대표) 필자
성명</td><td colspan="2">(한글)</td><td colspan="2">(한자)</td><td>(영문)</td></tr>
<tr><td>소 속</td><td colspan="3"></td><td>직위</td><td></td></tr>
<tr><td>연락처</td><td>전화</td><td colspan="2"></td><td>이메일</td><td></td></tr>
<tr><td rowspan="2">논문 제목</td><td colspan="5">(한글)</td></tr>
<tr><td colspan="5">(영문)</td></tr>
<tr><td colspan="6">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필자 성명 : (인)</td></tr>
</table>

[별지 4] (제25조 제5호 관련)

논문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5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긴급논문심사	7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별지 5] (제28조 관련)

논문심사서

심사위원	성명	㊞	소속, 직위	
	계좌번호			
논문제목				
게재예정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00호		년 월 일 발간	
심의사항	심의 · 검토의견			점 수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종합의견				종합평가 (점)

※ 가. 점수: 각 항목당 20점을 배점하며, 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종합평가: A. 게재(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D. 게재 불가(70점 미만) 입니다.

※※ 종합 의견 외에 추가되는 평가는 별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6] (제31조 제2호 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 투고 원고 수정사항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심사 사항	수정 위치	수정 내용

※ 작성 요령

- '심사사항'란에는 보내드린 종합심사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본문 란에는 본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느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만 밝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저자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위치,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서식에 따라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별지 7] 〈개정 2024. 2. 23.〉 (제34조 관련)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1. 저자

저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2. 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	

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함(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

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 · 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3조 10호 관련)

연구윤리 확약서

<table>
<tr><td>(대표)
필자 성명</td><td colspan="2">(한글)</td><td colspan="2">(한자)</td><td>(영문)</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d>직위</td><td></td></tr>
<tr><td>연락처</td><td>전화</td><td colspan="2"></td><td>이메일</td><td></td></tr>
<tr><td rowspan="2">논문 제목</td><td colspan="5">(한글)</td></tr>
<tr><td colspan="5">(영문)</td></tr>
<tr><td colspan="6">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필자 성명 : (인)</td></tr>
</table>

연구소 발간 자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06)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2권(2006)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 3권(2007)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4권(2007)

금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顚末)

▸ 5권(2008)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앙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薝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 獄中書信), 거의록(擧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轍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6권(2008)

시문기(時聞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홍성금석문(洪城 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고문서(鄭雲慶家 東學古文書), 세장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7권(2010)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所捉什物幷錄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竝錄成冊)

▸ 8권(2010)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竝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9권(2011)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중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木米太區別成冊),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모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摸關辭條約別錄成冊),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등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10권(2012)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牘),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謄書)

▸ 11권(2013)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繹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繹史), 본교역사(本教歷史)

▸ 12권(2014)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埈鎔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謄),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教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15)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教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2권(2015)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3권(2015)

학초전(鶴樵傳) 1

▸ 4권(2015)

학초전(鶴樵傳) 2

▸ 5권(2015)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6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 ~ 3

▸ 7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 ~ 6

▸ 8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 ~ 10

▸ 9권(2017)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림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중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 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회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솔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가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본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모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동오면 의거소 좌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첩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회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겸산집, 고당집, 고헌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헌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율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묵헌유고

▸ 14권(2022)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 16권(2024)

〈일본 사료〉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 내란실기 조선 사건, 조선폭동실기, 동아선각지사기전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

인 쇄 _2025년 5월 26일
발 행 _2025년 5월 31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편집인쇄 _(주)학술교육원(earticle.net)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701호
전화_0505-555-0740 / 팩스_0505-555-0741

pISSN 3022-2435 / eISSN 3022-3873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